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07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임미애 · 김정호 · 문대림
서영교 · 손 솔 · 송옥주
윤준병 · 이광희 · 이소영
이수진 · 이연희 · 임호선
정일영 · 주철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계획수립권자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 등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

후 관리 기능을 제도화하고 실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이 시급한 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 제40조 및 제43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농촌특화지구조성 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지연 또는 관리 부실로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기초 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 유지하되, 우선 지원 대상에 같은 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 지역을 추가함(안 제42조제2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이하”를 “이하 같다)·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별”을 “시·군·구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지정기준 등에”를 “지정기준, 지정 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3.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

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조 제5호가목에 따른 농촌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3조제2항 단서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0조,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란 시·군(광역시 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u>포함한다</u> .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 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 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 ----- ----- ----- ----- <u>포함한다. 이하</u> <u>같다) · 구(광역시 자치구를</u> <u>말한다</u> ----- -----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계획수립권자”란 시장·군 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 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u>이하</u> 같다) 또는 특 별자치시장을 말한다.	8. ----- ----- ----- ----- ----- ----- <u>이하 같다) · 구청장</u> <u>(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u>

9. ~ 17. (생 략)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말한다. 이하 ---.

9. ~ 1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군
· 구-----

--.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

② ~ ⑥ (생 략)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①·② (생 략)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u>시장 또는 군수</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u>제7조 제4항</u>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u>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u>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u> -----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u>제7조 제5항</u>----- -----.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	---

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②
(생 략)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
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
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
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
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
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군별로 농촌
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
할 수 있다.

<신 설>

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

-----.

② -----

----- 시·군·구별 ---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
별자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3.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
----- 지정기준,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

제15조(주민제안) ① -----

----- 시장·군수·구청장 -----
----- 제13조제4항 -----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
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②
(생략)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 또는 특
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④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
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3조(주민협의회) ①·② (생
략)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
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② -----
----- 시장·
군수·구청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장·군수·구청장 -----

-----.

④ 시장·군수·구청장 -----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주민협의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⑤ (생략)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 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사업시행자) ①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 시장·군수·구청장 -----

-----.

② ----- 시장·군수·구청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업시행자) ① 시장·군수·구청장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 시장·군수·구청장 -----
-----.
-----.

② 시장·군수·구청장 -----

-----.

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

-----.

③ 시장·군수·구청장 -----

-----.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

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4조(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 9. (생략)

----- 시·군
· 구-----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원조직) ① -----
----- 시장·군수·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 -----

-----.

1.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 ② (생 략)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 8.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

-----.

1. ~ 8. (현행과 같음)

④ -----
----- 시장·군수·구청장은 -----

-----.

⑤ -----
----- 시장·군수·구청장이 -----

-----.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군수·구청장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군수·구청장 -----

-----.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
-----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
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
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
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
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기본방침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특별
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
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
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② -----

----- 시장·군수
·구청장 -----
-----.
----- 시장·군수·구청장 --

-----.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② ----- 농림축산식품
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
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국가는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
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
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
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등은 취
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 사업에 대한 지원) ① (현행
과 같음)

② -----

-- 같은 조 제5호가목에 따른
농촌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2호---.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시장·군수·구청장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 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